

울산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가단1076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준, 유동열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신강식

변 론 종 결 2024. 2. 27.

판 결 선 고 2024. 4. 1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2. 12.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23. 1. 2. 접수 제1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12. 5. 9.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3100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1. 31. ‘C은 D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D은 2022. 11. 28. 이 사건 확정판결에 관하여 판결정본 및 집행문재도부여와 더불어 송달 및 확정증명을 신청하였다.

다. D은 2022. 12. 13. C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대금 1,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22. 12. 13.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다.

라. C은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12. 20.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3. 1. 2.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2022. 12.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는 627,872,489원이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참조). 소송을 주목적으로 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반드시 직접 소송을 수행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58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동기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임을 자인하였다.

②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원금이 110,000,000원인 채권을 양수받는 원고가 그 대가로서 D에게 지급할 반대급부에 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D 사이에 채권양도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은 2022. 12. 20.을 기준으로 합계 627,872,489원에 이르는 데 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은 1,000,000원으로서 채권추심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불균형하고, 이마저도 원고가 D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④ D이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9년 동안 C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울산 울주군 E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이유로 C에 대한 채권을 거의 무상으로 양도할 이유가 없었고, 더욱이 D이 C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채권을 양도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판사 오규희

별지